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성 북 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50
------------	-----

제출년월일 : 2023년 9 월 일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심이동권 확대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사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보험료 납부·보장기준·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마.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제외·보험증권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서울시 『2023년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계획』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3년 7월 13일 ~ 8월 2일(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기타의견 : 조례안 내용 외 보행권 보장 사전 정책 마련 노력 요청)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법제심사 결과: 검토의견 반영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내용
1) 제2조제4호 문구표현 단축	반영	1) 제2조제4항 문구 단축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소요예산규모 첨부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를 말한다. 2) 미첨부사유서에 소요예산 추가

5)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 1차년도: 총15,500천원(보험료 산출기준대수 : 375대)
 - 전동스쿠터: 213대 × 61,589천원 = 13,119천원
 - 전동휠체어: 162대 × 14,695천원 = 2,381천원
- ※ 산출기준: 최근6년간('17년~'22년) 성북구 전동보장구 보급대수 375대

4. 작성자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 정 숙